

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[] 신규등록 []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상호		전화번호	
	대표자		생년월일	
	사무소 소재지			
신청분야				
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				

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
진단전문기관의 ([] 신규등록 [] 등록증 재발급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1부 2.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) 1부 3.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4.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「국가표준기본법」 및 「계량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검정·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검정·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) 1부 5.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(대표자·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적 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
제출하여야 합니다.

외국인등록번호: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

→

접수

→

서면심사

→

기안·결재

→

등록결과 통보

신고인

처리기관(시·도)